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27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 : 권인숙・유정주・장경태

유동수 • 이수진(비) • 이용우

고영인 · 김정호 · 이수진

용혜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권자등의 명의 내지 ID 도용,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바일·콘솔기기 게임 등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어 인터넷 게임시간을 제한하여 도 여전히 청소년은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짐.

또한 최근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의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는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중독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게다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선택적으로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자율적 책임하에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함(안 제25조제1항제2호·제26조·제59조제5호 삭제, 제27조).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청소년에"를 "청소년과 그 가족에"로, "상담"을 "상담 • 교육"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
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	지 의무) ①
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	
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u><삭 제></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u><삭 제></u>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	
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	
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	
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	
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 저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4]2	273	조(인터널	넷게 임	중독	등의	피
č	해	청소년	지원)	1 -		
-						
-						
_						
_						
_						
_						
_						
-						
-						
-		<u>청소</u> 년	년과 그	가족	<u>에</u>	
_			<u>상담</u>	• 교육	<u>-</u>	
_						
-						
	2	(현행과	같음)			
에 <u>5</u>	593	조(벌칙)				
-						
-						
-			·			
1	′	~ 4. (ই	현행과	같음)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 <삭 제> 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